
입 법 정 보

2016-18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 회 사 무 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해양조사와 그 정보활용에 관한 법률제정(안) (해양수산부)	5
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6
3.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7
4.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안전위원회)	9
5.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0
6.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	10
7.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
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	11
9.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11
10. 「정부청사관리규정」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12
11.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12
12.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13
1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3
14. 한국해운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4
15. 한국해운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5
16.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15
17.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6
18.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7
19.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	17
20.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8
2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9
22.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0
23.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보건복지부)	20
24.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보건복지부)	21
2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21
2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부)	22
27.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	23
28.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	24
29.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26
30.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26
31. 「소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국민안전처)	27
32.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27
33.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28
34.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28
3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	28
36.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9
3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30
3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31
3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산자원부) ..	31
4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32
41. 「치료감호법」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32
4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34
4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34
44. 영사민원업무에 관한 규정 제정(안) (외교부)	35
45.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35
46.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36
4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36
4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38

49.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39
50.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공고)	40
51.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40
5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41
53.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42
5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	42
5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	43
56.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44
57.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	45
5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청)	45
5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청)	46
60.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47
6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50
6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	52
63.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54
64.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54
6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	55
66. 농림수산물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56
67.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 (국가정보원)	57
6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	58
69.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58
7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59
7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59

1. 해양조사와 그 정보활용에 관한 법률제정(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6. 8. 19.
- 마감일자 : 2016. 9. 28.

- 최근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변화에 따라 주변국간 해양관할권 확보, 해양자원 개발 관련 경쟁이 심화되고, 지구온난화, 육상자원 고갈 등 인류적 공통문제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이 필요한 한편, 국내적으로는 연안재해, 해양관광·레저 수요의 증가, 연안통합관리, 해양환경, 항만건설, 수산업 등 해양정책 수립에 해양정보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이러한 환경변화와 증가하는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해양 조사성과의 품질관리, 해양관측망 강화 등으로 관련기반을 확충하고 해양조사업의 진흥·발전과 생산정보가 다른 산업에 파급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도록 민간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해양조사 및 정보서비스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과 지원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하고자 함. 이에 현재 해양조사와 관련된 법률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전문성과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한 「해양조사와 그 정보활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하고자 함
- 가. 법률의 제명과 목적에 부합하게 해양조사, 해양관측 및 수로측량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해양조사의 체계적인 수행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해양조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 다. 해양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해양관측의 항목 및 방법과 국가해양관측망의 보호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 라. 항해의 안전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여야 할 기본수로측량의 종류별 실시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9조)
 - 마. 해양수산부장관이 발행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 시 일반수로측량을 실시하고 성과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 바. 해양지명의 조사 및 해양지명의 제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 사. 해양조사와 그 정보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해양관측업, 수로측량업, 해도제작업, 해양정보서비스업 등 해양조사업을 규정함(안 제33조)

- 아. 정확한 해양정보의 제공을 위해 해양정보의 품질관리 및 표준화를 규정함(안 제42조)

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6. 8. 19. • 마감일자 : 2016. 9. 28.
- 산지전용허가시 재해위험성 검토서를 제출하지 않기 위해 면적을 분할하여 허가를 받는 경우 이를 합산하도록 개선하고, 토석채취 기간연장시 토석채취허가시와 동일하게 축산시설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동의서를 받도록 하고, 국유림내에서 광물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채취한 토석 및 토사가 혼합하여 적치된 경우 경제성 평가를 받은 결과를 매각대금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산지전용허가 등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미리복구비를 예치하도록 하며, 복구설계서의 작성대상을 명확히 하고, 복구준공검사의 시기 등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산지전용허가시 제출서류 보완(안 제10조제2항제10호)
재해위험성검토서의 제출을 회피하기 위하여 연접하여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합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제출하도록 함
- 나. 토석채취기간의 연장시 제출서류 보완(안 제26조제1항제1호다목)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시에도 축산시설 소유자에 대하여 토석채취허가시와 같이 동의를 받도록 함
- 다. 국유림내 토석매각계약의 경우 경제성평가 결과 반영(안 제35조)
국유림내에서 광물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토사와 석재를 혼합하여 적치한 경우로서 이를 쇄골재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은 경우 이를 매각대금에 반영하도록 함
- 라. 사업자 명의 변경시 산지복구비를 미리 예치하도록 함(안 제37조제2항 후단신설)
산지전용허가, 토석채취허가 등에 대하여 사업자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도록 함
- 마. 산지복구의 범위에 대한 용어 정비 (안 제40조의3)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는 경우 또는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아

- 니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복구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용어를 정비함
- 바. 복구설계서의 작성대상 면적을 명확하게 함 (안 제42조)
- 복구설계서 작성시 산지복구를 하여야 하는 대상면적을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 전체면적으로 함
- 사. 복구준공검사 신청시기의 명확화 (안 제43조제1항)
-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의 경우에는 허가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 등록전환 측량성과도에 따른 면적의 증감이나 경계 변경을 위한 변경신고를 이행한 후 준공검사를 신청하도록 함
- 아. 산지전용허가기준중 비탈면 기준의 적용예외 (안 별표1의3 제2호다목)
- 산지전용시 비탈면의 높이를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나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문가의 안전성 검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함
- 자. 산지복구설계승인시 비탈면에 대한 예외인정 시설 추가 (안 별표6제2호)
- 복구설계 승인기준 중 임도시설에 대하여 별도의 복구기준이 있으므로 예외시설로 정함

3.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6. 8. 19. • 마감일자 : 2016. 9. 28.
-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에서 전망대 및 임도시설을 허용하고, 임업용산지에서 곤충사육시설·관리시설 및 유치원 시설을 허용하며, 산지전용허가신청지에 대하여 현지조사전에 경계표시를 하게하고, 산지일시사용신고로 설치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설치하는 무선전지통신 송수신시설의 규모를 100제곱미터까지 확대하며,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기관에 사방협회를 포함하고, 토석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토석채취의 타당성에 관하여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게 하며, 산지전용허가기준의 미비사항 등을 개선·보완을 하고자 함
- 가. 보전산지에서의 허용시설 확대(안 제10조, 제12조, 별표3)

지금까지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는 전망대 및 임도 등의 설치가 제한되어 산림경영등에 제한이 있었고, 새로운 농가소득원인

곤충사육시설과 유치원을 임업용산지에 설치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산양삼종자 등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나. 무선통신 송수신시설의 산지일시사용신고 면적 확대 (안 제18조제3항, 별표3의3)

무선통신 송수신 시설을 산지일시사용신고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을 100제곱미터까지 확대하여 도시지역에서 선로의 지중화 설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다. 산지전용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의 확대(안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산지전용타당성조사는 산지전문기관에서만 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지전문기관에 산지보전협회 외에 「사방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른 사방협회를 추가 함

-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토석채취 완화(안 제32조, 제32조의2, 제32조의4)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구지의 토석 및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토석채취 및 반출을 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제각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토석채취를 할 수 있도록 함

- 마. 산지에서의 구역등의 지정협의 및 산지전용등에 대한 권한의 이양 및 위임범위 명확화(안 제6조, 제15조, 제52조)

산지에서 구역 등의 지정·결정에 대한 변경협의의 경우 실제 변경되는 면적에 따라 권한을 이양하거나 위임하고, 산지전용허가 변경허가 등에 대하여는 최초의 허가권자에게 권한을 이양 및 위임토록 함

- 바.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 기준 완화를 확대하고 허가기준 완화에 대한 일관성 유지(안 별표2)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 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하는 공용·공공용시설에 대하여는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되는 공용·공공용시설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산지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산지전용허가기준과 같도록 함

사. 한국임업진흥원이 산지일시사용신고로 임산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별표3의3)

산지에서 임산물의 재배는 농림어업인등이 산지일시사용신고로 가능하지만, 한국임업진흥원은 농림어업인등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한국임업진흥원도 산지에서 산지일시사용신고로 임산물 재배를 할 수 있도록 함

아.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을 회피하고자 분할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의 면적기준 개선(안 별표 제4의2)

산지전용에 따른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을 회피하고자 산지를 분할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동일인이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으로 함

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인 공용·공공용시설 및 축산시설에 대하여 명확하게 하고, 「국유림법」임시특례시설에 대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하도록 함(안 별표5)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공용·공공용시설 및 축산시설에 대하여 부담금이 감면되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유림법」에 따른 특례로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토록 함

차.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은 면적 축소시 추가 시추탐사 생략(안 별표7)
토석채취허가 신청전 시추탐사를 실시하여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았으나 법률에 따라 면적이 축소되는 경우 추가 시추를 생략하도록 함

4.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안전위원회)

- 예고일자 : 2016. 8. 23. ● 마감일자 : 2016. 10. 4.
-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직장교육계획 제출을 대신하여 교육실시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자 함
- 가.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직장교육계획 제출 규정 삭제(안 제148조의2 제4항 삭제)
 - 1)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다음 연도 직장교육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교육대상자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교육은 제출된 계획에 따라 실시되기 어려워 교육계

획 제출의 실효성이 낮음

2) 교육실시 미흡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시정 보완이 가능하도록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직장교육계획 제출을 대신하여 교육실시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교육실시결과 제출 규정 신설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과 병행하여 개정추진하고 있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별표 5에 반영

5.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 예고일자 : 2016. 8. 23. • 마감일자 : 2016. 8. 30.
- 공무원채용시험 기능 강화와 전문성 확립을 위해 공무원 채용 담당 부서에서 경력 채용 관련 기능을 분리하여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등 인재개발국을 인재채용국으로 개편하고, 인사혁신 총괄·조정 및 기획 기능 강화를 위하여 종전의 기획조정관 소관의 인사제도 조사 및 연구 등 업무와 인사관리국 소관의 인사정책 관련 기능을 인사혁신국에서 관장하도록 하며, 성과보상 및 인적개발을 연계한 인사관리 체계정립을 위해 종전 인재개발국의 인재개발 기능을 인사관리국으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하부조직 간 일부 기능을 조정하고, 공직자 재산심사 강화를 위해 심사 기능을 분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6.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 예고일자 : 2016. 8. 23. • 마감일자 : 2016. 8. 29.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3항 및 제30조제5항에 따른 보상금 신청서식을 현행화하고 시행령 제30조의2제1항이 설(2016. 7. 28 시행)됨에 따라 치료신청서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One-Stop 민원서비스 구현을 위해 현행 「보상금 청구서」를 보상금 (치료) 신청서」로 개정하여 통합 운영

7.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6. 8. 23. • 마감일자 : 2016. 10. 4.
- 현재 국방대학교 특정직 교수에게 지급하는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가. 국방대학교 특정직 교수 대상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제13조의3)
 - 1)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국립대학교 교수에게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나, 현재 국방대학교 교수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 법적근거가 부재
 - 2) 기존에 국방대학교 특정직 교수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던 연구보조비를 교육, 연구, 학생지도의 영역으로 나누어 차등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

- 예고일자 : 2016. 8. 24. • 마감일자 : 2016. 10. 4.
-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가·상가 이면도로의 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30구역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시장등이 보행자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30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3 신설).
- 나. ‘30구역’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국고보조금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함(안 제138조의2).

9.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 예고일자 : 2016. 8. 24. • 마감일자 : 2016. 10. 4.

- 정부청사의 방호수준 향상을 위한 방호진단 관련 방호진단의 대상, 내용, 방법 등의 세부 운영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청사방호진단 신설(안 제6조 신설)
 - 1) 방호진단의 실시 주기 규정
 - 세종·서울·과천·대전청사 연2회 이상 및 합동청사 연1회 등
 - 2) 청사시설·출입관리·차량출입·열쇠 운영 등 방호진단 점검 내용 명시
 - 3) “정부청사 방호진단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방호진단 실시

10.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 예고일자 : 2016. 8. 24. • 마감일자 : 2016. 10. 4.
- 정부청사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방호지침의 수립근거를 명시하고, 정부청사 방호수준 향상을 위하여 정부청사에 대해 방호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청사 방호지침 수립근거 명시(안 제3조)
 -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정하는 관리지침의 범위에 방호 분야가 포함됨을 명시
- 나. 청사방호진단 신설(안 제9조의2 신설)
 - 정부청사에 대한 주기적 방호진단 실시를 통해 안전한 청사관리 체계 확립

11.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6. 8. 24. • 마감일자 : 2016. 9. 13.
- 시·도교육청의 자율적 조직 관리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의 조직·정원 현황 공개를 의무화하고, 설립 구분과 무관하게 모든 유치원을 각급 학교 정의에 포함시키는 등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 가. 시·도교육청 행정기구·정원 운영 현황 공개 근거 신설(안 제29조)
- 나. 설립 구분 없이 모든 유치원을 ‘각급 학교’에 포함(안 제2조제7호)

12.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6. 8. 24. ● 마감일자 : 2016. 10. 4.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입지공간 조성방안’ (‘16.6.9,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을 위하여 현재 유치업종 변경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또는 주요기반시설 계획이 변경되면 개발계획의 중요한 변경에 해당되나, 기반시설(도로는 제외)의 용량이나 면적의 증가를 동반하는 경우만 중요한 사항으로 보아 중요한 변경 사항을 완화하여 유치업종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안 제10조)

1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6. 8. 24. ● 마감일자 : 2016. 10. 4.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입지공간 조성방안’ (‘16.6.9,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을 위하여 산업단지 주요 유치업종 변경절차를 간소화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중복지정을 허용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가. 주요 유치업종 변경절차 간소화를 위한 개발계획의 중요한 변경 범위 축소 (안 제7조)
 - 현재 유치업종 변경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또는 주요기반시설 계획이 변경되면 개발계획의 중요한 변경에 해당되나, 기반시설(도로는 제외)의 용량이나 면적의 증가를 동반하는 경우만 중요한 사항으로 보아 중요한 변경 사항을 완화하여 절차를 간소화함

- 나.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 허용 (안 제8조의4)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을 허용하여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의 자족기능을 높이고 지역전략산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함
- 다. 공공시행자의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이윤율을 상향 조정하여 기업 및 근로자 지원시설 등에 재투자 (안 제40조제2항 및 제7항·제8항)
- 공공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윤율을 초과하는 이윤율을 적용하여 발생하는 이윤을 기업 및 근로자 지원시설 등에 전부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윤율보다 상향할 수 있도록 함
- 라. 공공출자 법인에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용지 수의계약 공급 허용 (안 제42조의3제4항)
- 산단재생 활성화를 위해 재생사업지구에서 공공시행자(법 제1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개발할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권자와 협의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14. 한국해운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6. 8. 25.
 - 마감일자 : 2016. 10. 5.
- 한국해운조합법이 개정 공포(법률 제14245호, 2016.5.29)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근거가 삭제된 조항을 정비하고, 정관 변경 승인 신청 시 총회 의사록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며, 공제가입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제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들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 가. 정관 변경 승인 신청 조항 신설(안 제2조)
조합의 정관 변경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승인 신청 시 총회 의사록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나. 공제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의 정비(안 제3조)

공제사업의 실시의 구체성 및 공제가입자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 공제 규정에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함

다. 위임규정 변경에 따른 조항 삭제(안 제4조)

당초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조합원 자격 승계 사항을 법률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규칙 규정 사항 삭제

15. 한국해운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6. 8. 25. • 마감일자 : 2016. 10. 5.

○ 한국해운조합법이 개정 공포(법률 제14245호, 2016.5.29)됨에 따라 외부감사의 자격요건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외부감사의 자격요건 규정(안 제2조의2)

법 제22조에서 감사 중 1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출하게 함에 따라, 회계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로 요건 규정

나. 조합 감독의 필요사항 규정(안 제3조의2)

법 제39조에서 조합 감독 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 업무 및 재산상황 감사, 결과보고 의무 부여, 결과에 따른 처분권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함

16.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인) (국민안전처)

• 예고일자 : 2016. 8. 25. • 마감일자 : 2016. 10. 5.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 ‘16.1.27. 시행 ‘17.1.28.)에 따라 소방용품 내용연수 도입과 관련하여 성능확인 절차 및 방법 등의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결합기능이 있는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성능인증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내용연수 도입에 따른 성능확인 검사* 방법 등 규정(안 제38조의 2)

- 소화기 시료 채취방법, 성능확인 검사종류 및 사용기간 연장방안 등
* 내용연수 경과 후 1년 이내(제조년 기준) 검사를 받거나(1회에 한해 3년 연장가능) 교체

나. 결합 기능이 있는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성능인증의 세부기준 도입

- 관련서류, 보유 시험시설, 방법, 발급 및 처리기간 등

다. 형식승인 취소에 관한 권한 위탁(안 제12조)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관련 업무를 위탁함에 따라 세부사항 정리

라. 성능인증의 취소 규정 법률 이관에 따른 세부사항 정비(안 제20조)

17.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6. 8. 26. • 마감일자 : 2016. 10. 5.

○ 환경측정기기의 소분야를 규정하고 있는 타 분야와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 분야 측정기기를 운행차 및 제작자 배출가스 측정기기와 그 부속기기의 소분야로 규정하고자 함.

또한, 측정대행업체 측정결과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측정대행업체 등록 또는 측정대행업체 등록사항의 변경 시 구비서류인 숙련도시험 적합 성적서를 정도관리 검증서로 개선하고, 측정대행업체 기술인력의 등록기준 및 전문성은 유지하면서 시료채취의 인력 수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료채취 기술능력 기준을 개선하며, 측정대행업체의 영업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측정을 대행할 수 있는 항목을 확대하려는 것임

○ 가.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중 자동차 분야의 기기 종류 및 분류체계를 9개 분야에서 2개 분야(운행차와 제작차) 배출가스 측정기기별로 변경(안 제2조 및 별표2)

나. 측정결과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측정대행업체 등록 시 구비서류인 숙련도시험 적합 성적서를 정도관리 검증서(숙련

도시험 + 현장평가)로 개선(안 제14조제3항제3호, 제4항, 제5항, 안 제15조제1항)

다. 전문교육 대상자의 기준을 대기 및 수질 등 해당분야 기술인력으로 명확히 구분(안 제25조제2항)

라. 측정대행업의 세부 등록기준에 측정대행기관의 영업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환경정책기본법에 있는 환경기준 항목 추가 확대(별표9)

마. 측정대행기관 시료채취의 인력 수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료채취 기술능력 기준 개선(규칙 별표11)

※ 대기분야 시료채취 인력은 숙련도 시험 적합 판정자, 수질분야의 시료채취 인력과 소음·진동분야의 현장측정 인력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해당분야 교육(평가 포함) 이수자

18.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6. 8. 26. • 마감일자 : 2016. 10. 5.

○ 시험·검사기관의 범위에서 누락되어 있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을 시험·검사기관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제·개정, 운영 등 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제·개정 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고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 가.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정('13.6)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부터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이 분리됨에 따라 시험·검사기관 추가(안 제13조의2제1항제11의2호)

나. KS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유사·중복 해소 등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환경오염공정시험 기준의 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위임(안 제17조제3항제1호 및 제1의2호)

19.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6. 8. 26.
- 마감일자 : 2016. 10. 5.

- 사업자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오염물질의 관리기준 초과여부에 관한 자가측정 업무를 측정대행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 측정대행업체가 관련법령에 맞게 측정·분석하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도록 하고, 측정대행업체의 측정·분석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 간섭 등 행위를 금지하도록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도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와 시험·검사기관의 환경측정분석사 의무 채용 미확보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신설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0.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6. 8. 26.
- 마감일자 : 2016. 10. 5.

- 경매절차에 따른 경락인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어업허가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어업자가 같은 시·군·자치구 내에서 주소를 변경하여 전입신고를 한 경우 주소 변경에 대한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어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의 폐업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폐업 신고서를 같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저당권 실행에 따른 어업허가 유예제도 개선(안 제10조제4항 개정)
경락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락인의 의사표시가 있고 허가권자가 유예기간의 단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업허가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 나. 전자어업허가증 도입에 따른 종이어업허가증 서식 폐지(안 제14조제1항 개정)
전자어업자허가증 도입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그동안 전자허가증과 종이허가증으로 발급하던 체계를 전자허가증으로 일원화함.
- 다. 신고어업자의 주소변경 절차 간소화(안 제26조 개정)
어업자가 같은 시·군·자치구 내에서 주소를 변경하여 전입신고를 한 경우 주소 변경에 대한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신고 어업자의

부담을 완화함.

라.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안 제28조제4항 개정 및 제5항 신설)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폐업 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폐업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시·군·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 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등 폐업신고 절차를 간소화 함.

마. 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사결과 반영(안 제42조 개정)

「행정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일몰기한이 도래되는 규제에 대하여 일몰해제 또는 일몰연장 등 심사결과를 반영함

바. 별지 서식 정비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어업허가 신청서 등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부 서식의 디자인을 재 설계하여 정비함.

2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6. 8. 5. • 마감일자 : 2016. 9. 19.

○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의 입금·관리 등을 규정하는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4 신설에 따라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의 신청방법, 절차 및 계좌관리에 필요한 사항,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 및 지급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자 함

○ 가.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 장애인복지급여를 수급계좌로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 입금신청서에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함(영 제33조의4의 제1항)

나. 수급자가 금융회사나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영 제33조의4의 제2항 및 제3항)

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관한 사

항을 미리 안내하여야 함(영 제33조의4의 제4항)

22.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6. 8. 26. • 마감일자 : 2016. 10. 5.
- 장애인연금수급계좌의 입금관리 등을 규정하는 장애인연금법 제13조의2 신설에 따라, 장애인연금수급계좌의 신청방법, 절차 및 계좌관리
에 필요한 사항과 장애인연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 및 지급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자 함
- 가. 장애인연금을 수급계좌로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연금수급계좌 입금신청서에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함(영 제11조의2의 제1항)
- 나. 수급자가 금융회사나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장애인연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영 제11조의2의 제2항 및 제3항)
- 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안내하여야 함(영 제11조의2의 제4항)

23.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6. 8. 26. • 마감일자 : 2016. 10. 5.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662호, ‘15.12.29 제정, ’ 16.12.30 시행, 이하 “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법 제3조에 따라 보조기기의 종류를 구체화 하고, 보조기기의 품목과 품목별 분류체계에 대해 고시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2조)
- 나. 법 제8조에 따라 보조기기 교부 등의 신청대상자, 결정, 의뢰, 절차, 비용청구, 품목, 정보제공의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 함(안 제3조부터 제9조)
- 다.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실태조사, 품질관리에 대한 협조, 안전등 품

- 질유지 및 향상을 위해 보조기기 업체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10조)
- 라. 법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중앙·지역보조기기센터의 설치·운영·인력배치 등을 규정함(안 제11조, 제12조, 별표1)
- 마. 법 제21조에 따라 보조기기업체의 육성·연구 지원 등, 우수보조기기 업체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3조, 제14조)

24.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6. 8. 26. • 마감일자 : 2016. 10. 5.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662호, ‘15.12.29 제정, ’ 16.12.30 시행, 이하 “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보조기기 관련 욕구, 보조기기 이용실태, 보조기기의 산업동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2조)
- 나.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하는 보조기기의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구체화(안 제3조)
- 다. 법 제11조에 따라 관리대상 정보의 범위 등을 구체화함(안 제4조)

2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6. 8. 26. • 마감일자 : 2016. 10. 5.
- 현장·수요자의 경쟁과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석유판매업자의 이동판매 용량 제한을 완화하고, 지능화되고 있는 가짜 석유 제조·판매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 가. 이동판매차량 적재용량 확대(안 제2조)
 - 주유소와 일반판매소의 이동판매차량 적재용량이 3kl로 제한되어

있어 물류비용 증가 등 소비자 가격 인상의 원인이 되어 적재용량을 5kl로 확대함

나. 가짜석유 포상금 지급상한액 상향 조정(안 제47조의2)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가짜석유 제조·판매의 대응 수단으로 내부자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기준을 상향하여 가짜석유 판매에 대한 단속 실효성 제고

다. 지위승계 신고 시 행정처분 사실 확인(별지서식 제2호 등 5건)

지위승계 시 종전 사업자의 행정처분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있어 양수인과 불필요한 법적분쟁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위승계(변경등록) 시 행정처분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라. 석유사업자 수급상황보고 변경(별표8 및 별지서식 제45호)

석유판매업자의 거래 대상이 다원화됨에 따라 유통시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중유와 부생연료유의 수급거래상황기록부 및 수탁법인의 종합보고를 받는 기관을 한국석유공사에서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변경함

2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부)

• 예고일자 : 2016. 8. 26. • 마감일자 : 2016. 10. 5.

○ 석유소매업자 간 판매를 허용하고 수출입업자의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장·수요자의 경쟁과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가짜석유제품 사용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과태료 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 가. 석유제품 소매단계 간 판매허용(안 제2조)

수직 계열화된 국내 유통구조를 수직·수평적 복합 유통구조로 개선하여 내수시장의 실질적 경쟁확대를 위해 주유소와 일반판매소간 거래를 허용함

나. 농업용화물자동차 면세유 공급처 확대(안 제2조)

농업용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주유소가 있는 면지역의 일반판매소에서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처를 확대하여 면세유 주유를 위한 농업인의 이동 비용 절감

다. 석유수출입업의 저장시설 등록기준 완화(안 제12조)

수출입업 등록 시 내수판매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과 5천킬로리터 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 것을 각각 15일분과 2천5백킬로리터로 완화하여 국내·해외 석유제품 간 가격경쟁 촉진으로 소비자 가격인하 유도

라. 가짜석유 사용자 과태료 상향조정(안 별표 6)

대형차량(화물차량, 버스 등) 차주들은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아 불법주유를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과 부과액을 상향 및 세분화하여 소비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부당이익(세금탈루) 편취를 방지함

마.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환급기간 연장(안 제27조)

분산전원 활성화 및 하계 전력피크 완화를 위하여 열병합용·냉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 환급기한을 ‘16.12.31일에서’ 19.12.31일까지로 3년 연장

바. 부과금 납부방법 다양화(안 제25조의2)

부과금관리기본법 개정시(‘15.12월) 부과금 납부방법의 다양화를 관련 법령에 의무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부과금 납부대상자가 납현금 이외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부과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

27.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

• 예고일자 : 2016. 8. 26. • 마감일자 : 2016. 8. 31.

○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과 금품등의 수수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 제정(법률 제13278호, 2015. 3. 27. 공포, 2016. 9. 28. 시행)됨에 따라 관련 행위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규정 보완(안 제11조)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서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요구·약속하는 행위도 금지함에 따라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범위를 금품등을 요구 또는 제공받기로 약속하는 행위까지 확대함.

-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의 항목을 반영하여 관련 문구를 조정함

나. 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규정 개선(안 제14조)

-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 신고의무,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에 따라 직무관련 또는 그 지위·직책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한 외부강의·회의등은 대가를 받지 않아도 사전에 신고하도록 신고범위를 확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외부강의·회의등은 소속 지방의회의장이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 2) 의원의 외부강의 등에 대한 과도한 대가수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장이 직무관련 외부강의 등의 대가 상한기준을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다. 경조사 통지 및 경조금품 수수행위의 합리적 제한(안 제17조)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자와 주고받는 경조금품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경조금품 수수만 제한하도록 함.

라. 금지된 금품등의 처리범위 확대 및 신고 의무화(안 제20조)

-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공직자등이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어 이를 반영함.
- 2) 제14조(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를 위반하여 받은 외부강의·회의등의 대가에 대한 처리규정이 없어 금지된 금품 등의 범위에 이를 추가함

28.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

- 예고일자 : 2016. 8. 26. ● 마감일자 : 2016. 8. 31.
-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과 금품등의 수수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278호, 2015. 3. 27. 공포, 2016. 9. 28. 시행)됨에 따라 관련 행위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규정 보완(안 제14조)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서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요구·약속하는 행위도 금지함에 따라 금품등의 수수에 관한 제한 범위를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는 행위까지 확대함.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서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의 항목을 반영하여 관련 문구를 조정함.

나. 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범위 확대(안 제14조의2)

1) 공무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원이 자신으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에게 금품등을 주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어 이를 추가함.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서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제공의 약속·의사표시도 금지함에 따라 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범위를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까지 확대함.

다. 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규정 개선(안 제15조)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서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 신고의무,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에 따라 직무관련 또는 그 지위·직책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한 외부강의·회의등은 대가를 받지 않아도 사전에 신고하도록 신고범위를 확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외부강의·회의등은 소속 기관의 장이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2) 공무원의 외부강의 등에 대한 과도한 대가수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직무관련 외부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 상한기준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횟수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회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함.

라. 경조사 통지 및 경조금품 수수 제한 실효성 제고(안 제17조)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자와 주고받는 경조금품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경조금품을 받

거나 요구 또는 수수를 약속하는 행위만 제한하도록 함.

마. 금지된 금품등의 처리범위 확대 및 신고 의무화(안 제21조)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서 공직자등이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어 이를 반영함.

2) 제15조(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를 위반한 외부강의·회의등의 대가에 대한 처리규정이 없어 금지된 금품등의 범위에 이를 추가함

29.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 예고일자 : 2016. 8. 26.

• 마감일자 : 2016. 10. 5.

○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의 주체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서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하고,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자격자의 명칭을 기업재난관리자에서 기업재난관리사로 변경하는 등「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249호, 2016.5.29 공포, 2016.11.30.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 관련 조문의 내용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 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안 제2조, 제4조, 제7조, 제7의2, 제12조)

나. ‘기업재난관리자’를 “기업재난관리사”로 변경(안 제7조의3)

다. ‘중앙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기업재난관리자’를 ‘기업재난관리사’로 변경(안 별표2, 안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3호서식, 제4호서식, 제5호서식, 제5호의2서식)

30.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 예고일자 : 2016. 8. 8.

• 마감일자 : 2016. 8. 18.

○ ‘신용카드 등에 의한 비축물자대금의 납부’ 근거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마련(2016년 7월 28일 시행)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위임함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 신용카드 등에 의한 비축물자대금 납부(안 제9조의2조)

비축물자대금 납부대행기관은 「민법」 제32조 및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 또는 조달청장이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비축물자대금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자로 함

31.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안전처)

- 예고일자 : 2016. 8. 26
- 마감일자 : 2016. 10. 5

○ 시보소방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경우 면직할 수 있는 근거마련 및 고위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역량평가제 도입, 시행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시보소방공무원 면직요건 확대(안 제8조)

시보소방공무원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직할 수 있도록 요건을 확대함.

나.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신설(안 제11조의2)

채용후보자가 임용 및 교육훈련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교육훈련성적이 나쁜 경우,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후보자로서 자격을 상실하도록 함.

다. 소방공무원 역량평가제 신설(안 제12조의3)

고위직 소방공무원으로 갖추어야할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역량평가제를 도입·시행하도록 함.

라. 소방총감과 소방정감 신분보장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안 제28조제1항단서)

소방총감과 소방정감 직급의 신분보장 제외규정 신설로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법 등과 형평성 유지하도록 함

32.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6. 8. 26.
- 마감일자 : 2016. 10. 7.

- 초등학교 준교사 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 과목을 현행 표시과목으로 수정하고자 함.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 및 NCS 기반 고교직업교육과정 도입에 따라 예비 교원의 현장 적합성 제고를 위해 표시과목을 신설 변경하고자 함

33.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6. 8. 26. • 마감일자 : 2016. 10. 7.

- 초등학교 준교사 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 과목을 현행 표시과목으로 수정하고자 함.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 및 NCS 기반 고교직업교육과정 도입에 따라 예비 교원의 현장 적합성 제고를 위해 표시과목을 신설 변경하고자 함

- 가. 초등학교 준교사 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 과목을 현행 표시과목과 일치시킴(안 제20조3항)

나. 2015 개정 교육과정 및 NCS 기반 고교직업교육과정 도입에 따라 중등학교 자격증 표시과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표시과목을 신설 변경함([별표1]).

34.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6. 8. 26. • 마감일자 : 2016. 10. 7.

- 「정부조직법」 개정(2013.3.23)에 따라, 행정기관장명을 현행 법령에 맞게 수정하고자 함

- 행정기관장명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현행 행정기관장명에 맞게 “교육부장관”으로 자구 수정

3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 예고일자 : 2016. 8. 26. • 마감일자 : 2016. 10. 5.

- 국가기관 등이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취하고,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성폭력 예방의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13179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 따라서 성폭력 예방조치 및 예방계획에 명시되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줌으로써 관계 기관의 효과적 운영을 지원하고, 추가로 성폭력 예방의 책무성 강화라는 취지에 맞춰 점검결과 공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성폭력 예방조치 내용 규정(제2조 내 신설)
성폭력 예방교육 실적 공표 범위 확대(제2조제7항 변경)
성폭력 예방계획 수립 내용(제2조의3 신설)

36.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6. 8. 29. • 마감일자 : 2016. 10. 10.
- 관리대상 외래생물 확대 및 체계적인 관리, 자연생태계유출 방지 근거 마련 등 외래생물 관리제도를 재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외래생물 등의 정의 변경 및 정의 신설(안 제2조)
 - 미유입종도 관리할 수 있도록 외래생물의 정의에 포함하고, “유입주의 생물”과 “생태계유출금지생물”의 정의를 신설. 또한 지정절차의 추가를 반영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정의를 변경함.
- 나. 유입주의 생물의 위해성심사(안 제22조의2)
 -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반입시 최초 1회만 위해성심사를 받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생태계유출금지 생물 또는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다. 생태계유출금지생물 및 생태계교란 생물의 지정 해제 및 변경(안 제23조의2)
 - 환경부장관은 서식환경의 변화, 적응에 따른 생태계 안정 등을 이유로 생태계유출금지 생물 또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가 감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라. 생태계유출금지 생물의 관리(안 제24조의2)

- 생태계유출금지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마. 생태계유출금지 생물 및 생태계교란 생물의 방출 등의 금지(안 제24조의3)

- 생태계유출금지 생물 및 생태계교란 생물을 자연생태계로 방출, 방생, 유기, 이식하는 것을 금지하고, 학술연구 목적으로만 방출등을 허가하며,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

바. 생태계교란 생물의 경과조치(안 제24조의4)

-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전 사육·재배 개체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하여 해당세대에 한해 계속해서 사육·재배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사육·재배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함

3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6. 8. 29. • 마감일자 : 2016. 10. 10.

○ 의무기록사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 법적근거 마련 및 안경·콘택트렌즈의 구매대행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219호, 2016. 05. 29. 공포, 2016. 11.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의무기록사 면허 취득을 위한 교과목·학점 기준 및 의무기록사 교육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안 제7조 및 안 제7조의2 신설)
 - 의무기록사 면허를 취득하려면 관련 교과목을 40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요건을 별표로 규정함
 - 의무기록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으로서, 의무기록 관련 교과목 40학점을 개설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신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도록 명시함

나. 안경·콘택트렌즈의 구매 또는 배송을 대행하는 방법을 구체화함(안 제15조의2 신설)

- 개정법률에서 금지하는 안경·콘택트렌즈의 구매대행 등의 판매방법을 구매대행업체가 자신의 사이버몰에 상품정보·가격 등을 직접 공시하고 판매하는 경우로 한정함

다. 행정조사 시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해야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7조 신설)

라. 1년 이상 휴직 후 복귀하는 의료기사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뒤 업무에 복귀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18조)

3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6. 8. 10. • 마감일자 : 2016. 9. 22.

○ 의무기록사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 법적근거 마련 및 안경·콘택트렌즈의 구매대행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219호, 2016. 05. 29. 공포, 2016. 11.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의료기사 등의 업무 범위를 법률에 상향 규정함에 따라 근거조항 명시(안 제2조)

나.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보수교육의 시간·방법·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안 제11조)

다. 보수교육 수탁기관이 시정명령을 불이행 경우와 의료기사 등이 면허의 실�태와 취업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등 신설(안 제15조 및 별표)

-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별표에 구체적으로 명시함

3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6. 8. 29. • 마감일자 : 2016. 10. 10.

- 액화석유가스(LPG) 수출입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연도 내수 판매 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저장시설 건설은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소요되어 수출입업 신규 진입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 따라서,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16.7.5) 중 에너지신산업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시장의 민간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주요 시장진입 장벽인 저장시설 등록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4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 예고일자 : 2016. 8. 29. • 마감일자 : 2016. 9. 9.
-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신청 및 제한에 대하여 매 3년마다 그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현행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에 대한 발굴허가를 제한 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사항 신설(제34조제2호)
- 2. 제11조에 따른 발굴허가의 신청 및 제한 : 2017년 1월 1일

41.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6. 8. 29. • 마감일자 : 2016. 10. 10.
- 최근 강남역 공중화장실 살인사건 등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신질환자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어 범법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및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특히 피치료감호자가 사회에 복귀한 후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사회 내 재범방지시스템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음.
- 현행 치료감호법 상 치료감호 기간이 심신장애인 및 정신성적 장애인 은 15년, 약물 등 중독자는 2년으로 제한(살인범죄자는 최대 6년 연장 가능)되어 있어 피치료감호자가 만기에 이르도록 치료 필요성 및 재범 위험성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출소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만기 종료자에 대한 보호관찰 규정조차 없어 재범방지시스템에 공백이 있으므로,

만기 종료자에 대한 보호관찰 규정을 신설하여 만기 종료로 출소시에도 보호관찰을 통해 계속 치료를 받도록 적극적으로 사후 감독함.

- 한편,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어 3년간 보호관찰을 받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치료를 게을리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아진 경우 신속히 개입하여 격리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할 필요성이 높으나, 현재 가종료 보호관찰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구인하여도 가종료 취소시까지 ‘유치’ 하는 규정이 없어 조사 후 석방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가종료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유치 규정을 신설하여 재범위험성이 높은 대상자를 즉시 유치하여 격리하고 가종료 취소 절차를 통해 치료감호를 재집행함으로써 재범방지시스템에 공백을 제거함.

- 또한, 치료감호 종료 또는 가종료로 보호관찰시 부과되는 특별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준수사항 위반시 준수사항 추가·변경 등 제재수단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보호관찰 종료 사유를 정비하고 치료감호시설 내 담배 등 반입행위의 벌칙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치료감호 및 치료감호 후 보호관찰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가. 치료감호 만기 종료시 보호관찰 부과(안 제32조제1항 신설)

치료감호 만기 종료시 3년간의 보호관찰을 필요적으로 부과함

- 나. 특별준수사항 부과·추가·변경·삭제(안 제33조 신설)

치료감호 종료·가종료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 및 준수사항 위반시 준수사항 추가·변경 등 제재수단을 명문화함

- 다. 만기 종료자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시 벌칙 부과 (안 제52조 신설)

치료감호 만기 종료자가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 라.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유치제도 도입(안 제34조의2 신설)

보호관찰소의 장이 가종료자를 구인·조사하여 가종료 취소 신청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소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함

- 마. 치료감호시설 내 담배 등 반입행위 벌칙 부과(안 제52조 신설)

담배 등 금지물품을 치료감호시설에 반입하거나 소지·사용·수수·교환 또는 은닉한 피치료감호자와, 피치료감호자에게 전달할 목적으

로 허가없이 치료감호시설에 금지물품을 반입하거나 피치료감호자와
수수 또는 교환한 사람에게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을 부과함

바. 보호관찰 종료 사유 정비(안 제32조제3항, 제4항)

보호관찰 종료사유에서 “새로운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되었을 때” 를 제외하여, 치료감호가 재집행되는 경우에만 보호
관찰이 종료되도록 규정함

사. 용어의 정비(안 제36조의2, 제36조의3)

지정법무병원의 추가로 ‘치료감호소’ 를 ‘치료감호시설’ 로 용어
를 정비함

4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인)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6. 8. 29. • 마감일자 : 2016. 10. 10.
- 지도 등의 공간정보 활용 수수료 폐지 및 인하를 통하여 관련 산업
을 활성화하며,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 · 보완하기 위함
- 가. 국토지리정보원장과 지도판매업자간의 업무계약 제도 폐지(안 14
조)
- 나. 지도데이터 활용 수수료 폐지 및 항공사진측량성과의 사본 발급 일
부 수수료인하 20,000원→2,000원 (안 별표 12)
- 다.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수수료 인하 : 기술료 (15% → 13%), 인건비
(심사 투입인력 6.4% 하향조정)(안 별표13)
- 라. 3차원 공간정보, 실내공간정보, 수치주제도 등을 공공측량성과의 심
사 항목에 추가 (안 별표 13)

4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6. 8. 29. • 마감일자 : 2016. 10. 10.

- 측량업 등록신청 등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가. 측량업 등록신청 처리기간 14일에서 10일로 단축(안 제35조제4항)
- 나. 지적측량수행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방법을 보증보험에 공간정보산업협회의 공제도 포함(안제41조,제43조)
- 다. 지적도 축척변경사업 청산금의 납부 기일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안 제76조제2항)
- 라.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합병등기 불가통지가 있더라도 지적소관청에서 착오로 잘못 합병한 경우에만 직권으로 정정(안 제82조제1항제8호)
- 마.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관련 과태료 징수권한 위임규정 삭제(안 제103조 제1항제46호)
- 바. 토지이동 및 지적측량 신청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처리 법적근거 상위법령으로 조정 (안 제104조의2 개정)

44. 영사민원업무에 관한 규정 제정(안) (외교부)

- 예고일자 : 2016. 8. 30. • 마감일자 : 2016. 10. 10.
- 재외공관에서 각종의 재외국민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규정이 부재 함. 특히 재외국민 보호 등의 민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재외국민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나 근거 규정의 미비로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 임.
- 이에 영사민원업무에 관한 일반규정을 제정하고, 소관 사무 수행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함

45.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6. 8. 30. • 마감일자 : 2016. 10. 10.
-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4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3조의4제1항 신설에 따라 위임된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 신청서식을 정하고자 함

-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4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3조의4제1항 신설에 따라 위임된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 신청서식을 정하고자 함

46.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6. 8. 30. • 마감일자 : 2016. 10. 10.
- 장애인연금법 제13조의2제3항 및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임된 장애인연금수급계좌 신청서식을 정하고자 함

4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6. 8. 30. • 마감일자 : 2016. 10. 10.
-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강화, 급여인정조사내용 확대, 부당지급급여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인정조사 내용 구체화, 부당지급 급여 발견 시 구체적 행정처분 기준 등 법률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 내용 구체화(안 제3조 및 제4조)
 - 개정법률이 인정조사 내용을 구체화(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2호)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인정조사 내용 및 조사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나.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범위 중 가족의 범위 구체화(안 제12조)
 - 개정법률이 수급자가 요구하거나 활동지원기관이 제공할 수 없는 행위를 신설하고(법 제16조 제2항) 보다 자세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함(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가족의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다.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절차, 수량, 기간 등 신설(안 제17조)
 - 개정법률이 수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거나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급여를 중단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급여의 수량이나 제공 기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법 제19조제1항) 필요한 사

- 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함(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그 절차, 수량, 기간 등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라.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신청 및 결정절차 등 구체화(안 제18조)
- 개정법률이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하고(법 제19조의2제1항) 신청,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함(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마. 활동지원기관의 재무·회계 기준 신설(안 제28조)
- 활동지원기관이 따라야 하는 재무·회계 기준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따르도록 함
- 바. 활동지원기관의 운영위원회 구성 기준 등 신설(안 제29조)
- 개정법률이 활동지원기관에 운영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함(법 제22조의2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관련된 사항을 보다 상세히 정할 필요가 있음
- 사. 활동지원급여 제공 자료의 이관 절차 신설(안 제31조)
- 개정법률이 활동지원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등에 따라 급여 제공 자료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도록 함(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자료의 이관 절차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아.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변경(안 제32조, 별표3)
- 활동지원기관이 부정수급을 저지른 경우 개정법률이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나 지정취소로 변경하고(법 제24조 제1항), 별표3에서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의 정도와 적발횟수 등에 따라 차등하여 업무정지 혹은 지정취소 처분을 하도록 정함
- 자.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사항 기록·관리 조항 신설(안 제33조)
- 개정법률에서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함(법 제24조의2제5항)에 따라 과징금 징수사항의 기록·관리에 대해 정할 필요가 있음
- 차.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정지 기간 신설(안 제41조, 별표7)
- 개정법률에서 부정수급 등의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별표 7에서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의 정도와 적발횟수 등에 따라

기간을 달리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하도록 정함

4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6. 8. 30. ● 마감일자 : 2016. 10. 10.
-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강화, 급여인정조사내용 확대, 부당지급급여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부당지급급여 등 부정행위에 따른 과징금 금액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추가(안 제8조)
 - 수급자격과 관련 있는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 신설(안 제17조의2)
 - 주간활동, 야간보호 등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를 정의하여 근거 마련함
- 과징금 부과절차 등 신설(안 제 18조의2, 별표 1)
 - 개정법률이 활동지원기관에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금액과 부과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함(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과 과징금 부과 절차를 정함
- 주간활동급여를 수행하는 활동지원인력의 범위 신설(안 제19조)
 -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로 신설된 주간활동급여를 제공하는 인력의 범위를 활동보조인보다 전문성이 높은 인력으로 규정
- 활동지원인력의 범죄경력조회 절차·범위 구체화(안 제20조의2)
 - 개정법률이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근거를 마련하고 절차·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함(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시행령 개정
-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조항 삭제(현행 제27조의2 삭제)
 - 기존 시행령에 규정하던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를 개정법률에서 법률사항으로 규정하여 시행령 규정 삭제

49.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6. 8. 30. • 마감일자 : 2016. 10. 11.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유효기간을 정하고,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4022호, 2016. 2. 3. 공포, 2016. 8.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위해와 관련이 없는 무첨가 강조 표시 위반의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여 규제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의 정기교육훈련 면제기준을 조사 평가 결과 적합(만점의 85 퍼센트 이상) 판정을 받은 업소에서 만점의 95퍼센트 이상 받은 업소로 강화(안 제64조제1항)
- 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에 필요한 절차 등을 신설(안 제67조의2)
- 다.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은 전년도 사업 실적보고서와 해당연도의 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말일까지 예산서 등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 규정 마련(안 제86조의3 신설)
-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설립된 주관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주관기관의 사업에 관한 사항, 운영예산 편성·집행의 적정 여부 등을 지도·감독 규정 마련(안 제86조의 4 신설).
- 마.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의 섭취대상자를 알리는 질환명 표시가 가능하도록 허위표시 과대광고로 보지 않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 확대(안 별표 3)
- 바. 의약외품 성분이 식품에 전이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의약외품 제조시설을 식품제조 가공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식품제조 가공업의 시설기준 적용 특례 확대(안 별표 14)
- 사. 영업자가 제과점영업과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영업을 함께 하는 경우 하나의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을 개선하여 영업자의 부담 완화(안 별표 14)
- 아. 알레르기 유발성분 미표시 및 유통기한 미표시 등 영업자의 회수 대

상 식품 확대 (안 별표 18)

자. 중량이나 가격 변조를 목적으로 식품에 납 얼음 한천 등 이물을 혼입시키거나 냉동수산물에 얼음막을 내용량의 20%를 초과하게 생성시켜 영업에 사용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 23)

차. 위해와 관련이 없는 무첨가 강조 표시 위반의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화하여 영업자 부담 완화(안 별표 23)

카. 자가품질검사 부적합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기준 마련(안 별표 23)

50.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공고)

• 예고일자 : 2016. 8. 30. • 마감일자 : 2016. 9. 9.

○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관리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6. 0. 0. 공포, 2016. 0. 0. 시행)됨에 따라 피보험자격관리 업무수행기관을 직업안정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피보험자격관리 업무위탁기관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조, 제2조의2,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13조)

외국인 근로자,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 탈퇴 신청대상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변경(안 제2조, 제2조의2) 피보험자격관리 업무위탁기관의 변경과 관련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토록 했던 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토록 변경(안 제4조, 제5조, 제8조)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결과의 통지 및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확인통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변경(안 제6조, 제13조)

51.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6. 8. 30. • 마감일자 : 2016. 9. 9.

- 기존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던 피보험자격관리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함으로써 현재 고용보험의 적용 및 보험료 부과 업무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리 업무의 이원화에 따라 나타나는 행정 비효율 및 국민 불편사항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 피보험자격관리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안 제3조의2, 제145조)
 -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 탈퇴 신청 대상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변경하고(안 제3조의2),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던 피보험자격관리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도록 함(안 제145조)

5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6. 8. 30. • 마감일자 : 2016. 9. 19.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자금 대출의 편의성 제고 및 원활한 상환을 위해 의무상환 납부방식 변경 등 학자금 대출 상환제도 개선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채무자가 신고기간 외 신고할 수 있는 사유 및 기간 명시(안 제1조의2 신설)
 - 채무자 신고기간 동안 신고할 수 없는 예외를 인정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므로 천재지변, 채무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집행 등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시
 - 채무자가 신고기간 외 신고 할 수 있는 기간을 명시
- 나. 채무자가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인한 채무면제 신청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신청서식 및 심신장애자의 범위 규정(안 제1조의3 신설)
 - 영 제8조제2항에 채무자가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인한 대출원리금 상환의무 면제 신청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신청서 서식 규정
 - 민법 제9조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민법 제12조에 따른 피한정후견인을 심신장애로 인한 면제대상으로 규정
- 다. 대학생인 채무자 상환유예 신청 및 승인(거부) 통지 서식을 마련하고 상환유예 종료 후 유예한 금액의 상환방법 등 명시(안 제1조의4 신설)

- 법 제18조제7항 및 영 제10조의2 신설에 따른 신청서 및 유예 승인(거부)통지서 서식 마련
 - 대학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 명시
 - 원천공제 또는 납부통지 받은 의무상환액을 유예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는 유예기간 종료 후 의무상환액을 결정·고지하여 상환 받을 수 있는 규정 마련
 - 결정·고지한 의무상환액을 미납한 경우 독촉 및 연체금 가산 규정, 체납처분 규정 등 마련
- 라. 종합소득자의 의무상환액 신고납부 규정이 고지납부로 변경됨에 따라 신고납부 관련규정 삭제(안 제9조)
- 종합소득자의 의무상환이 신고납부에서 고지납부로 법령 개정됨에 따라 신고납부와 관련된 규정이 불필요하므로 삭제
 - 영 제20조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변경 및 조문 정비
- 마. 선납 등 신설된 제도에 따른 원천공제 중단통지 대상 확대(안 제11조 신설)
- 법 제20조제2항·제3항 및 제21조제4항 개정으로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이 추가되어 조문 정리
 - 선납 등 신설된 제도에 따라 더 이상 원천공제가 불필요하여 원천공제 중단통지대상에 추가
- 바. 영 제35조의2에 따른 전자송달 신청 서식 마련(안 제31조의2 신설)
- 채무자가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변경, 철회하는 서식 규정

53.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6. 8. 30. • 마감일자 : 2016. 10. 10.
- 법제처의 차별적·권위적 법령용어 정비 일환으로 전문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온 용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고자 함

5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6. 8. 31.
- 마감일자 : 2016. 10. 10.

- 폐기물로 인한 화재·폭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성 정보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그간 이원화되어 관리되던 폐기물 수출입 제도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여 관리하고자 관련 제도를 삭제하고자 함.
- 가. 폐기물 유해성 정보 전달체계 구축(안 제18조제7항~제9항 신설)
 - 1) 부식성 폐기물 등 지정폐기물 배출자가 해당 폐기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유해성 정보를 작성하고 해당 사업장에 비치하도록 하며, 위탁처리하는 경우 수탁자에게도 정보를 전달하도록 의무화 함
 - 2)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부터 전달 받은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집·운반 차량, 처리시설 등에서 작업자가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각각 비치하도록 함
- 나.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 이관(안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 등 삭제)
폐기물 수출입 제도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동 법에서 관련 조문 삭제

5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인) (환경부)

- 예고일자 : 2016. 8. 31.
- 마감일자 : 2016. 10. 10.

-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여 생산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새로 설정하여 이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제 방식을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으로 변경하되, 새로운 재활용 용도나 방법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그 밖에 건설기술 용역을 수행하는 자가 배출자의 건설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건축물 또는 설비 등을 철거·해체하는 경우 건설폐기물 분별해체 의무 부여(안 제5조제2항)
- 나. 건설공사의 건설기술 용역을 수행하는 자가 배출자를 대신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Allbaro시스템)에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대신 입력하는 경우를 처리업 허가취소 대상에 포함(안 제18조제1항, 제25조제2항)
- 다. 배출자의 신고,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신고 등 인·허가 과정에서 일정 검토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거나 처리기한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허가·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안 제17조제3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3항, 제27조제6항, 제28조제2항, 제30조제3항, 제31조제4항, 제33조제2항)
- 라.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경우 반드시 영업정지처분을 하도록 과징금 대체 위반행위에서 삭제(안 제26조제1항)
- 마.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배출자가 되는 건설공사의 경우 원도급사가 직접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범위 확대(안 제27조제2항)
- 바. 건설폐기물 재활용 규제방식을 원칙허용·예외 금지 방식으로 변경하고, 새로운 재활용용도나 방법은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은 후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34조의2,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

56.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6. 8. 31. • 마감일자 : 2016. 10. 10.
- 공공기관에 의한 신도시 건설시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도시가스 및 전기 냉·난방설비는 설치가 제한되고 있음. 사업 시행초기에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집단에너지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자의 수요기반확보를 위해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규모의 경제성이 약한 중소 주택단지(1만호 미만)는 열원간 경쟁 촉진 및 소비자의 열원 선택권 강화 측면에서 규제완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협의대상 개발사업의 범위 조정 (안 제3조제1항)

현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주택건설호수 5천호 이상에서 1만호 이상으로 상향

57.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6. 8. 31. ● 마감일자 : 2016. 10. 10.

- 신고처리 기간이 지나도 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수리가 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신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업의 정지나 제한을 당한 자가 그 기간 내에 사업을 하거나 또는 저장소를 사용한 경우의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가스사고조사위원회를 가스사고조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고압가스제조 신고시설에 대한 신고제도 개선(안 제4조제5항)

고압가스제조 신고시설에 대해 신고처리 기간이 지나도 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수리가 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신고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나. 제제조항 신설(안 제9조제43호, 제35조의2제1항제2호)

사업의 정지나 제한을 당한 자가 그 기간 내에 사업을 하거나 또는 저장소를 사용한 경우에 허가나 등록, 지정의 취소를 위한 제제조항을 신설함.

다. 명칭변경(안 제26조의2)

가스사고조사위원회의 명칭을 가스사고조사단으로 변경함

5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청)

● 예고일자 : 2016. 8. 31. ● 마감일자 : 2016. 10. 10.

-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의 등록요건, 초기창업자 대상 지원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초기창업자의 창업 성공률 제고 및 신속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 가. 액셀러레이터 등록 요건 (안 제9조의2 제1항, 2항, 3항, 4항 및 5항)

-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기 위한 액셀러레이터의 요건 규정

나. 액셀러레이터의 지원내용 (안 제9조의3 제1항 및 2항)

- 초기창업자 대상 액셀러레이터의 지원내용 규정

5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청)

• 예고일자 : 2016. 8. 31.

• 마감일자 : 2016. 10. 10.

○ 초기창업자 육성을 지원하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의 정의, 등록요건, 육성 근거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액셀러레이터의 등록 및 지원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초기창업자의 창업 성공률 제고 및 신속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자산운용사는 이를 집합투자기구 형태로 모아 벤처투자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창업투자회사의 벤처펀드에 출자를 희망하나, 집합투자기구에 참여하는 출자자 수가 제한되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

○ 가. 초기창업자의 사업개시일 (안 제3조)

- 초기창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의 기준을 규정

나. 핀테크에 해당하는 세부 업종규정 (안 제4조 제1항 및 2항)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규정

다. 액셀러레이터의 자본금(안 제13조의2 제1항)

- 액셀러레이터로 등록하고자 하는 상법에 따른 회사 및 비영리법인의 자본금 및 출연재산 금액규모 규정

라. 액셀러레이터 대상 금융관련 법률(안 제13조의2 제2항)

- 액셀러레이터가 준수해야 하는 금융관련 법률 적용

마. 액셀러레이터 보유 전문인력 및 시설(안 제13조의2 제3항 및 4항)

- 액셀러레이터의 상근전문인력 및 보유시설에 대한 기준 마련

바. 액셀러레이터의 창업자 대상 투자금액(안 제13조의3 제1항)

- 초기창업자에 대한 액셀러레이터의 최소투자금액 규정
- 사. 액셀러레이터의 창업자 지원기간(안 제13조의3 제2항)
- 초기창업자에 대한 액셀러레이터의 최소(의무)지원기간 규정
- 아. 액셀러레이터의 업무상황 보고 (안 제30조의 제1항, 제3항 및 제4항)
- 액셀러레이터의 업무보고 및 검사 대상 장부·서류 규정
- 자. 액셀러레이터 등록 취소 및 지원 중단(안 제31조의4)
- 액셀러레이터의 등록 취소 및 지원 중단 기준 규정
- 차. 집합투자기구의 창업투자조합 출자자수 명확화(안 제14조제1항제3호)
- 집합투자기구가 벤처펀드(창업투자조합)에 출자시 최초 출자자 수와 상관없이 집합투자기구를 1인 출자자로 인정

60.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인)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6. 8. 31.
- 마감일자 : 2016. 10. 10.

-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배달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안전조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이들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악천 후 및 강풍 시 타워크레인의 운전 작업 중지에 관한 기준을 강화하며 화재 발생 시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작업 장소에서 화기 작업을 할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도록 하여 대형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기저장장치를 포함한 축전지 설비 등 비상 전원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민의 이해를 도모하고, 유해·위험성이 높은 화학물질의 관리 수준을 상향 조정하며 나아가, 밀폐공간의 개념을 확대하여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시 질식사고 등으로 인한 재해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이륜자동차 운행 시 안전모 착용 조치 및 안전장치 작동 여부 확인 의무 부과(안 제32조제1항제10호, 제86조제11항)
사업주는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배달하는 근로자에게 승차용안전모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륜자동차의 전조등, 브레이크 등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를

탑승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함

나.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 중지 풍속기준 강화(안 제37조제2항)

타워크레인의 운전 작업 중지 풍속 기준을 순간 풍속 초당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서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그 기준을 강화 하여 강풍에 의한 낙하물 사고 등의 재해가 감소될 수 있도록 함

다. 화재 발생 시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작업 장소에 화재감시자 배치 (안 제241조)

근로자가 용접, 용단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용접 면 등 보호구 착용으로 인하여 가연물 등의 착화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화재 발생 시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작업 장소에서 화 기 작업을 할 때에는 화재를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근로자의 대피 를 유도하는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도록 함

라. 전기저장장치 등 비상전원 종류 명시(안 제308조제1항)

정전으로 인한 기계·설비의 갑작스러운 정지 시 화재, 폭발 등에 대비하여 전력이 공급되도록 하는 비상전원 장치의 종류를 구체적 으로 명시하여 국민의 이해를 돕고, 특히 산업현장에서 비상전원으 로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혼란이 있는 전기저장장치 (Energy Storage System)를 비상전원의 한 종류로 명확히 함

마. 화학물질의 관리수준 변경 (안 제420조, 별표 12)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규정한 특별관리 물질과 비교하여 해당 물질의 관리수준을 예측할 수 있도록 관리대 상 물질도 “상당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건강 장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정의하고, 발암성 또는 생식독성 이 매우 유해한 수준인 물질 중 관리를 강화할 경우 근로자의 직업 병 및 안전사고의 감소 효과가 큰 물질 24종의 관리 수준을 상향함.

바. 근로자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는 석면 폐기물 처리 작업의 확대(안 제497조의3제1항)

현행 규정은 사업주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함유한 폐기 물의 처리 작업을 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석면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석면 처리 작업에는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하는 작업 외

에 자연재해나 화재 등으로 무너진 건축물의 잔재물을 수거하여 배출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입법의 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사. 비파괴검사 시 개인선량계 및 방사선정보기 착용 의무화(안 제574조 제2항 신설)

사업주가 방사선 업무를 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하여야 하는 방사선 물질의 밀폐, 차폐물의 설치 등 작업 장소에 대한 조치 외에 근로자가 방사선정보기 및 개인선량계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여 근로자 개인의 방사선 피폭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자 함

아.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성 강화

1) 밀폐공간 개념의 확대(안 제618조 및 별표 18)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시 환기, 관계 근로자 아닌 사람의 출입 금지, 보호구의 착용 등의 안전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 따른 밀폐공간의 개념이 협소하여 법 적용상의 한계가 노출됨에 따라 밀폐공간의 개념에 화재, 폭발 외에 질식으로 인한 위험성 추가하고, 유해가스의 종류에 일산화탄소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나아가 다양한 형태의 밀폐공간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을 추가하여 입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밀폐공간 작업 시 보건작업 프로그램의 구체화(안 제620조제2항, 제621조 각각 신설)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 및 환기결과 등을 검토하여 안전한 작업이 가능한 경우에만 작업을 하도록 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등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구체화하는 체계적으로 열거하여 밀폐공간 작업의 사전안전성을 강화함

3) 밀폐공간 작업 시 출입금지 표지(별지 제5호 서식 신설)

밀폐공간에는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게시하도록 되어 있어 출입금지 표지에 들어갈 내용을 별도의 서식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알리고자 함

4) 밀폐 공간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호흡보호구 명확화(안 제620조제5호)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 “등” 을 갖추어 두도록 하고 있어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하는 장소에서 방독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여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호흡보호구의 종류를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만으로 명확히 함

5) 그 밖에 관련 조문의 체계적 정비 등(안 제134조, 안 제619조 부터 제645조까지)

그 밖에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시 안전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작업 절차에 맞게 조문을 체계적으로 재배열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조속기”를 “속도조절기”로 정비하여 국민들의 어려운 법령 용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6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6. 8. 31. • 마감일자 : 2016. 10. 10.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현행 시행규칙 제30조제4항은 사업의 일부를 도급 주거나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준 사업주가 그 수급인의 근로자를 위하여 산재예방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20개의 장소를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2016. 5.28. 서울지하철 구의역 협착 사고의 경우 위 20개의 위험 발생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 도급인의 책임을 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현행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하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 이외에 크레인 등 양중기, 철도차량 등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추가하고 그 밖에 상위 법률과 내용이 상이한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위험장소 확대(안 제30조제4항)

현행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를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20개 장소 이외에 철도 차량, 크레인

등 양중기 등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추가하고자 함

이에 따라 하여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가 있는 장소가 확대 됨에 따라 사업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제조 등의 금지물질 사용승인 취소 규정 삭제(현행 제80조제1항 삭제)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3항에서 같은 조 제2항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조 등 금지물질의 제조·수입 또는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시행규칙 제 80조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함.

다. 정보보호를 신청한 신규화학물질의 공표명칭 변경(안 제91조제1항)

화학물질의 명칭을 사업주 임의로 공표명칭이 아닌 다른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면서 환경부 통보시 물질 대조가 가능한 ‘총칭명’으로 변경하고, 정보보호 기간이 만료되면 화학물질의 명칭, CAS 번호 등을 다시 공표할 수 있도록 함

라.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재분류(안 별표 12의 2, 별표 13)

백석면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 허가대상 물질에서 같은 영 제29조의 금지물질로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 별표 12의 2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및 별표 13의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의 검사 항목 규정에서 석면을 허가대상 물질 항목에서 분진항목으로 정비하고자 함.

마.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재분류(안 제93조제1항 별표 11의5)

백석면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 허가대상 물질에서 같은 영 제29조의 금지물질로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 별표 11의5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규정에서 석면을 허가대상물질 항목에서 분진항목으로 정비하고자 함.

바.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시험 실시 기관 규정 삭제(현행 제136조의3 삭제)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3제3항은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시험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13은 위 시험의 실시기관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시행규칙 제136조의3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시험의 실시기관으로 중복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함

6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6. 8. 31.
- 마감일자 : 2016. 10. 10.

- 현행 계약형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노 사의 무관심 및 연금제도 운영 전문성의 부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제도 도입의 양극화 및 합리적 자산운용 미흡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 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면서 운용의 전문성도 제고하는 새로운 퇴직연금 지배구조인 기금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한편, 새롭게 기금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기존 계약형퇴직연금제도를 병존시켜 가입자의 퇴직연금제도 선택권을 확대하고 두 제도 사이의 상호 발전적 경쟁체제를 유도하려는 것임.

*계약형퇴직연금제도(현행제도):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와 운용 자산관리계약 체결 후 운영기금형퇴직연금제도:사용자가 수탁법인과 신탁계약을 체결 후 수탁법인이 운영

- 가. 계약형 기금형퇴직연금제도 정의 신설(안 제2조)

현행 계약형퇴직연금제도 외에 기금형퇴직연금제도가 추가됨으로 인하여 퇴직연금제도 개념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형퇴직연금제도 및 기금형퇴직연금제도를 명확히 정의하고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 나. 기금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안 제7장 제31조의2, 제31조의6)

1) 기금형퇴직연금제도를 새롭게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약형퇴직연금제도와 동일하게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청취한 후 도입해야 함.

2) 또한 계약형퇴직연금제도와 기금형퇴직연금제도 간 변경 및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내용 및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함.

다. 수탁법인 설립 및 허가(안 제7장 제31조의4)

- 1) 기금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 주체인 수탁법인의 형태를 인적 물적 요건을 구비한 비영리재단법인 등으로 하고,
- 2) 수탁법인을 설립하려는 사용자는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법인 정관과 기금형퇴직연금규약의 작성 및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 3) 고용노동부는 설립요건 및 경영건전성, 근로자 보호 등의 기준을 정하여 심사 후 허가하도록함으로써 수탁법인의 설립절차를 명확히 하여 기금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을 원활하게 하고, 근로자 수급권을 보호하고자 함.

라. 수탁법인 이사 및 이사회(안 제7장 제31조의9)

- 1) 수탁법인의 이사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동수로 선임하고 외부 전문가를 포함함으로써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 2) 또한 이사의 결격요건을 규정하여 이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 3) 이에 따라 선임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는 이사회에서 적립금 운용의 기본원칙인 운용계획서를 마련하는 등 수탁법인의 중요 사항을 결정하도록 함.

마. 수탁법인의 업무(안 제7장 제31조의10 11)

- 1) 수탁법인의 업무로 계약형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이외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한하여 적립금 직접 운용 업무를 추가하고,
- 2) 재무건전성 및 인적 물적 요건을 갖춘 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에게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수급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자산관리업무는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에 위탁을 강제하며,
- 3) 자산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에게 연금자산의 운용 위탁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가입자와 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 간 이해상충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
- 4) 한편, 수탁법인의 자금 차입 및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운영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수탁법인의 안정성 및 영속성을 보장하고자 함.

바. 수탁법인에 대한 감사 및 검증(안 제7장 제31조의14)

수탁법인 감사의 내부감사와 아울러 외부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및 독립계리업자 또는 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의 적립금 부담금 검증을 의무화 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사. 연합형제도 관련 사항 및 준용규정(안 제7장 제31조의15 16)

1) 둘 이상의 사용자가 하나의 수탁법인을 통하여 기금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연합형 제도의 경우 수탁법인의 지배구조는 적립금의 규모 및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

2) 한편, 준용규정을 통하여 기존 계약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기간, 급여수준, 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운용현황의 통지,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 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규정을 기금형퇴직연금제도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3) 계약형퇴직연금제도의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규제인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에 관한 규정도 기금형퇴직연금제도의 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용하도록 함.

63.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6. 8. 31. • 마감일자 : 2016. 10. 14.

○ 사회(산업체)의 수요에 맞춰 취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학생의 전공 및 강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함

○ 대학의 장이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학년 이상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전과)을 허가할 수 있도록 조문 개정

64.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6. 8. 31. • 마감일자 : 2016. 9. 5.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7조에 따르면,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시 의정서」 등에 따

른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시장접근물량과 관련하여 자연재해·병충해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와 생산기반 취약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농림축산물의 수급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이를 해소하고 관련 국내 산업을 보호하며 외화 획득용 원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그 시장접근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국내 농산물의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관련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늘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14,467톤에서 50,467톤으로 늘려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6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6. 9. 1. ● 마감일자 : 2016. 10. 11.
-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인 냉매의 대기중 누출 최소화 및 안정적 회수를 위하여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의 범위를 확대하고, 냉매회수업의 등록제를 도입하는 한편,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부품의 결함시정절차를 개선하고,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제재수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의 범위 확대(안 제9조의3)

냉매 배출원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의 범위를 현행 공기조화기에서 산업용 및 냉동·냉장용으로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까지로 확대함
- 나. 냉매회수업 등록제 도입(안 제9조의6 신설)
 - 1) 냉매의 회수과정에서 누출 최소화 등 안정적 회수를 위하여 냉매회수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은 등록을

- 취소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결함시정절차 개선(안 제53조제3항)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현행은 자동차제작자가 자발적으로 결함시정을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환경부장관이 해당 자동차제작자에게 그 부품의 결함시정을 명하도록 함
- 라. 황합유기준 준수여부 위반시 제재수단 강화(안 제90조의2 및 제91조 제2호의6 신설 등)
저황유 사용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현행은 황합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벌칙에 처하도록 강화함
- 마.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위반시 제재수단 합리적 개선(안 제91조 제2호의5 삭제)
현행은 사업자가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개선명령과 벌칙을 함께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선명령만 부과하도록 개선함

66. 농림수산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6. 9. 1. ● 마감일자 : 2016. 10. 11.
-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인증제도 혁신방안(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보고, ’ 15.11월)”의 일환으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을 공동 개정고시(’16.6월)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신속인증심사 신청 근거를 마련하고, 신속인증심사 심사·평가 비용 신설, 인증서 재발급 신청 및 변경 신청 일원화, 인증 표시방법 개선 및 인증 신청서 서식 정비 등을 위해 농림수산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가. 신속인증심사 신청 근거 및 신속인증심사 심사·평가 비용 신설 (안 제6조제1항, 별표 1)
개발 신기술의 조기 상용화 등 신속한 인증심사를 원하는 경우 신기

- 술 신속인증심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신기술 인증 건당 심사·평가 비용의 3배 이내에서 별도 고시하도록 개선
- 나. 인증신청서 첨부서류 개선 및 ‘서류심사’ 명칭 변경(안 제6조제1항 및 제3항)
- 인증신청서 첨부 서류* 개선
- * 공장등록증 사본(등록한 경우) 삭제, 품질경영체제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기구(ISO)의 인증서(보유한 경우) 추가 등 ‘서류심사’ 를 ‘서류·면접심사’ 로 명칭변경(안 제6조제3항)
- 다. 인증서 재발급 신청 및 변경 신청 일원화(안 제6조의3제3항~제5항)
-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재발급 신청하도록 신청서 일원화
- 라. 인증 표시 방법 개선 및 인증신청 관련 서식 정비(안 별표 2, 별지 제1호·제1호의2·제4호·제7호 서식)
- 인증의 표시 방법 중 신기술명칭을 제품명으로 변경하고, 인증번호 및 제조자명 등 표시사항을 구체화(안 별표 2)
- 인증신청서 및 인증 유효기관 연장 신청서 서식의 기재항목(기업유형, 매출액, 수출액 등) 변경 및 제출서류, 처리절차 정비(안 별지 제1호 및 제4호 서식)
- 신속인증심사 신청서 서식 신설(안 별지 제1호의2 서식)
- 인증서 재발급신청서 서식과 인증변경신청서 서식을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서식으로 일원화(안 별지 제7호 서식)

67.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 (국가정보원)

- 예고일자 : 2016. 9. 1. • 마감일자 : 2016. 10. 11.
- 우리나라의 사이버공간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사이버공격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사회 혼란을 유발하고 있음.
- 특히, 국가·공공기관은 물론 농협(’ 11), 금융·방송·신문사(’ 13), 서울메트로·한수원(’ 14.12), 스마트폰(’ 16) 등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민간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북한의 사이버공격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의 국가적 대응활동은 공공·민간 부

문이 제각각 분리, 독립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광범위한 사이버공격 위협에 효율적 대처가 불가능한 실정임.

공공 부문은 대통령훈령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근거하고 있어 행정기관 이외 입법·사법기관은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어 있고, 민간 부문은 사이버공격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법률 미흡으로 사이버 공격 징후를 실시간 탐지·차단하거나 신속한 사고 대응에 한계가 있음. 비록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등 유관법률이 산재해 있으나 법률마다 주관기관과 보호 방법·절차가 달라 대규모 공격 발생시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이 곤란한 실정임.

따라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사이버공격 예방·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이버안보에 관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함.

6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6. 9. 1. • 마감일자 : 2016. 10. 11.
- 가. 유아교육진흥원의 명칭을 시대의 흐름을 고려하여 쉬운 우리말로 표기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 나.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에 대한 결격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유아교육진흥원”을 “유아교육원”으로 명칭 변경(안 제6조)
- 나. 외국인유치원에 적용이 예외되는 규정 추가(안 제16조)
- 다. 유치원운영위원의 결격사유 조회 관련 규정 신설(안 제19조의4 신설)

69.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6. 9. 1. • 마감일자 : 2016. 10. 11.
- 가. 「유아교육법」에 유치원입학 관련 조항이 추가 신설됨에 따라 법률 개정 내용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나. 유치원과 시·도 교육(지원)청 등 교육 현장의 의견과 타 부처 권고 사항 등을 반영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함

○ 가. 「유아교육법」 제11조에 따라 유치원에 입학할 유아를 모집 선발 (안 제15조제1항)

나.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설치대상 기준 정비(안 제22조의2)

다. 유치원운영위원회 및 소위위원회 구성 시 학부모의 성비 고려(안 제22조의3 제2항제1호 및 안 제22조의10 제2항)

라. 학부모 운영위원의 선출방법 다양화(안 제22조의4제2항 제3항)

마.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조항 신설(안 제22조의7 신설)

바. 긴급한 사유 발생 시 운영위원회 심의 절차 생략 가능(안 제22조의10)

7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인) (행정자치부)

• 예고일자 : 2016. 9. 1. • 마감일자 : 2016. 10. 11.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 이행의 지체 시 일정 비율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는데 이의 비율(지연배상금률)을 1/2 수준으로 감경하여 계약상대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에서 1/3배 이내의 범위로 하향 조정하여 업체의 입찰참가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과징금 금액의 감경 시의 절차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7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행정자치부)

• 예고일자 : 2016. 9. 1. • 마감일자 : 2016. 10. 11.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기관으로서 자체조달 할 경우 제3자가 검증할 수 있도록 사전 규격공개를 의무화하고,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자격·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194호, 2016. 5.29. 공포, 2016.11.30. 시행)됨에 따라 구매규격 사전공개의 방법·내용·시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한편, 공동도급 중 분담이행방식의 지연배상금 부과기준을 명확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물품·용역의 사전 규격 공개 관련 구체적인 기준 마련(안 제13조의2 신설)

법 제9조의2에서 위임된 물품과 용역의 사전 규격 공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규격의 사전공개는 5일간으로 하며 관련 업체가 이의제기 시 계약담당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등 구체적인 방법·내용·시기 등을 마련함

- 나. 공동도급계약 중 분담이행방식의 지연배상금 부과기준 명확화(안 제90조제3항 신설)

공동도급계약 중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일부 구성원의 분담부분이 지연되어 다른 구성원의 분담부분의 계약이 불가피하게 지연된 경우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고, 이 경우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도록 함

- 다. 일괄입찰 등 기술형 입찰의 평가방법 결정절차 개선(안 제96조제1항·제3항·제4항, 제98조의2제1항·제2항, 제128조제1항, 제131조제1항·제2항)

일괄·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선정에 있어 공사의 기술적 특성 및 난이도에 부합하는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정하는 경우 전문성을 갖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